

2025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지원사업 공고

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·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신청 접수하고자 하는 지역 내 우수 강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컨설팅, 근로환경개선금 및 조직활성화 비용을 지원하고자 『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지원 사업』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

2025년 3월 28일

울산광역시장

(재)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 및 환경을 갖춘 경쟁력 있는 지역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을 지원하여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,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청년-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촉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및 청년인재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
- 지원내용

구 분		지원내용
필수 지원	기업 컨설팅	· 고용노동부-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에 필요한 항목 컨설팅
선택 지원 (중복지원불가)	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 지원	·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, 동아리 및 학습조직 활동 등 복지 지원 ▶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
	근로환경개선금	· 복지공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▶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

2. 모집개요

□ **공고기간: 2025. 3. 28.(금) ~ 4. 23.(수)**

※ **접수기간 : 2025. 4. 01.(화) ~ 4. 23.(수) 18:00**

□ 모집대상

- 공고일 이전부터 울산에 본사(사업장)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아래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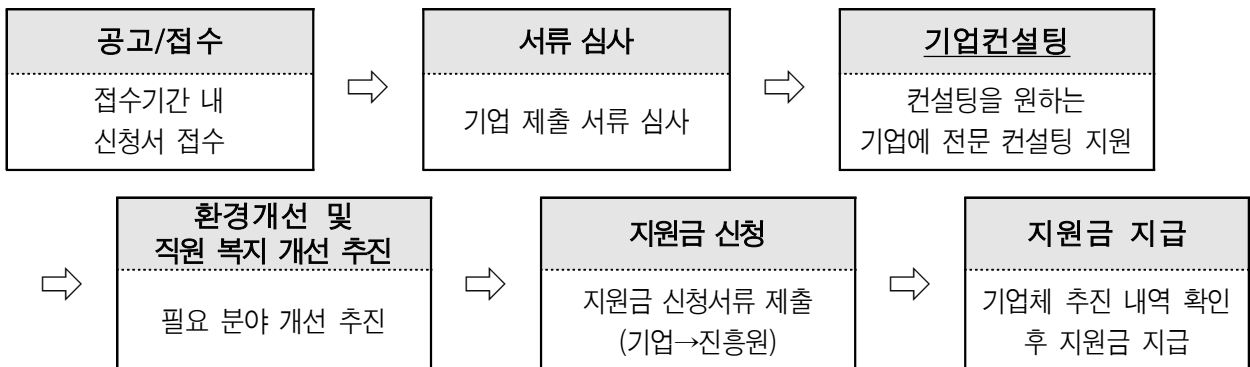
신청 제외 대상

- ①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BB- 미만 기업
 - ②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2. 12. 31. 이후인 기업
 - ③ 2025년 고용노동부·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 기업(24.12.27. 발표)
 - ④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기업
 - ⑤ 공고일 기준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
 - ⑥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
 - ⑦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된 기업
 - ⑧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(대표자 포함)
 - 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기업
 - ⑩ 공고일 기준 「근로기준법」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
 - ⑪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
- ※ 고용노동부·중소벤처기업부 「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결격요건」에 해당되는 기업(24. 9. 12. 공고)

○ 선정방법

- 신청자격 적격여부 판단
- 1차 서류 심사, 2차 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

□ 운영절차



3. 신청방법

□ 접수기간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2025. 4. 01.(화) ~ 4. 23.(수) 18:00
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 ※ 상기 제출시간 이내에 접수분만 인정
- 접수처 :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(북구 산업로 915, 2층) 일자리지원부 고용창출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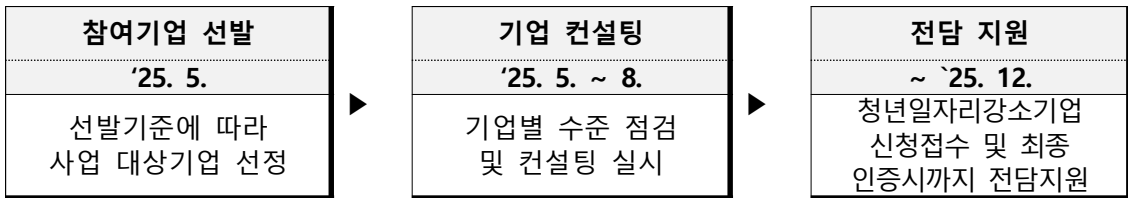
□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절차

- 사업참여대상 선정(5월)

구분	내용
선정방법	모집공고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대상으로 제외대상 해당여부 등을 평가 후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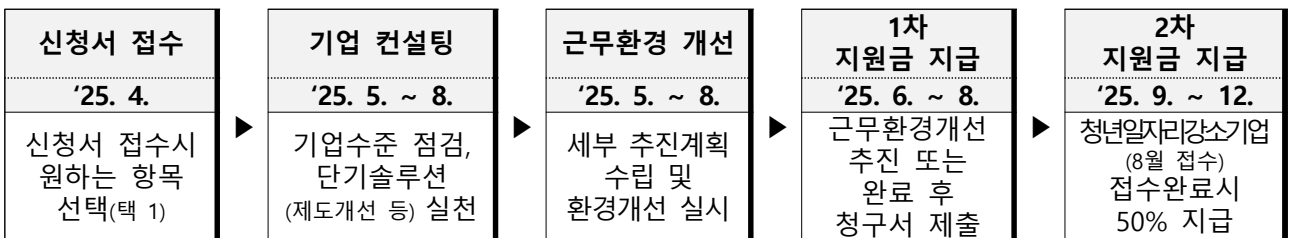
- 기업 컨설팅 추진절차

- (기업 선발) 선발기준에 따라 사업대상 기업 선정
- (컨설팅 실시) 컨설턴트의 개별 기업 수준 점검 및 단기 솔루션 제공
- (전담 지원)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및 최종 인증시까지 전담 지원



- 근무환경개선금 추진절차

- (신청서 접수) 원하는 지원항목 선택(근무환경개선 또는 복지지원비 중 택1)
- (기업 컨설팅) 기업 수준 점검 및 단기 솔루션(제도개선 등) 제공, 실천
- (세부계획 수립) 기업별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수립
- (근무환경 개선) 자체적으로 계획 및 목적에 적합한 근무환경개선 시행
- (1차 지급) 근무환경개선 추진 또는 완료 후 청구서 제출 시 50% 지급
- (2차 지급) 해당 기업이 '26년 고용부-중기부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 접수 시 잔여 50% 지급
- (중간점검) 10월말 기준 지원금 미소진 기업은 잔액포기서 제출, 잔여 예산 범위내 예비후보 기업 선정 및 지원



○ 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 지원 추진절차

- (신청서 접수) 원하는 지원항목 선택(근무환경개선 또는 복지지원비 중 택1)
- (세부계획 수립) 기업별로 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지원 세부추진 계획 수립
- (활동 실천) 계획 및 목적에 적합한 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지원 활동 시행
- (지원금 지급) 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 지원 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
- (중간점검) 10월말 기준 지원금 미소진 기업은 잔액포기서 제출, 잔여 예산 범위내 예비후보 기업 선정 및 지원



□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

주의사항

- ✓ 기업별 자체적인 개선 활동 수행 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됨
- ✓ 근무환경개선금의 경우에는 지급요건 미충족 시 지원금이 전액 지원되지 않음
- ✓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통합선정지표 중 “복지공간” 도입 및 개선과 관련된 항목에 사용되어야 함
- ✓ 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지원비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통합선정지표(자기학습, 기업문화 등)와 관련된 활동에 사용되어야 함

4. 유의사항

- 신청제외 요건 등은 본사 사업자등록번호, 고용보험관리번호 기준으로 심사
-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제출기한 내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업체의 책임으로 함
- 신청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,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업체 선정이 취소됨
- 제출한 서류는 심사 자료로만 활용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

▲ (문의처)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고용창출팀 ☎ 052-283-7204